

## M&A 관련 계약서

### SPA (주식매매 계약서)

• 주식(구주)의 매각과 관련한 조건, 진술 및 보증, 손해배상,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, 확약사항 등

### SHA (주주간 계약서)

■ 거래(구주거래 or JV설립) 후 주주 간 경영참여 및 권리, 의무 등

### SSA (주식인수계약서)

- 대상회사와 인수인 간 인수조건, 진술 및 보증, 손해배상,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, 확약사항 등
- → SSA에 Exit, 경영에 관한 사항 등 기술하는 경우 有

### TSA (서비스합의서)

- 매도인이 매수인의 PMI 및 인수 후 특정한 Service 제공하는 경우
- →대기업 등 그룹 자회사 매각 또는 사업.기술적 Dependency 존재하는 경우
- →별도 계약서 없이, SPA에 포함되는 경우 有

## TSA 사례

IT

- 2018년 NTT 데이터 서비스(NTT Data Service)는 델 서비스(Dell Service)를 31억 달러에 인수
- →NTT 데이터가 델 서비스 직원을 흡수할 때 델 서비스는 NTT 데이터 서비스에 브리지 IT 서비스(bridge IT services)를 제공

**Brand** 

- 한국콜마의 CJ헬스케어 인수
- KT-MBK 컨소시움의 금호통운렌터카
- →2015년 롯데에 매각시까지 KT금호렌터카 Brand 사용

**Procuring** 

• 수직 계열화된 그룹의 특정 Entity 또는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

### Question

■ A그룹은 급식사업 계열사C를 매각하기 위해 B사와 협상 중, B사는 A그룹에 C사의 A그룹 계열사 향매출 보장을 요구. 계약서에 특정기간과 특정물량을 확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.

### SHA,JVA

SHA

■ M&A, Financing, Joint venture 등 주주간 특정한 협약 등을 규정한 포괄적인 계약서를 의미

**JVA** 

- 실무적으로 Joint venture 설립 시, 상호간 출자대상, 권리 및 의무 등을 기술(통상적으로 5:5 또는 50%+1주)
  - → SHA 대비 Exit에 관한 규정이 비구체적 or 선언적인 경우 多
- JV 사례: 기술협력, 기술과 자본의 만남, 제조/매입/매출처 등 상호 보완, 또는 특정국 진출 목적(Negative list 강한 국가의 경우)

## SHA 구성항목(1/3)

■ 1조 용어의 정의 ■ 2조 임원의 지명 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 처분 제한 ■ 3조 주식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조 투자자의 Drag along ■ 5조 기존대주주의 Tag along 회수, Exit • 6조 배당 관련 ■ 7조 수익배분 특례 ■ 8조 경업금지의무 ■ 9조 기타 확약 사항 경업금지, 손해배상 ■ 10조 손해배상 ■ 11조 해제 및 해지 ■ 12조 비밀유지 ■ 13조 기타사항

## SHA 구성항목(2/3)

- 1조 계약의 발효 및 당사자들의 의무
- 2조 이사회 구성 및 경영(기존 대주주에 대한 Exit 인센티브, IPO 구주매출 규정)
- 3조 창업 주주의 근무에 관한 약정 사항(경업금지 의무 규정)
- 4조 창업 주주의 Tag along
- 5조 투자자의 Drag along
- 6조 창업주주등의 주식매각 제한
- 7조 비밀유지
- 8조 면책
- 9조 계약의 해지
- 10조 통지
- 11조 기타사항

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

회수, Exit

처분 제한

경업금지, 손해배상

## SHA 구성항목(3/3)

- 1조 용어의 정의
- 3조 임원 및 이사회

• 2조 대상회사의 운영

- 4조 주주총회
- 5조 신주 등의 인수권
- 6조 주식의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
- 7조 최대주주의 Call option
- 8조 주요주주들의 Put option
- 9조 주요주주들의 Drag along
- 10조 경업금지 등
- 11조 손해배상
- 12조 해제
- 13조 비밀유지, 14조 기타규정

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

처분 제한

회수, Exit

경업금지, 손해배상

## SPA 구성항목

- 1조 용어의 정의
- 2조 본건 거래(거래 정의, 매매대금, 지급방법, 대금조정 등)
- 3조 거래종결(거래종결 방법 등)
- 4조 선행조건(매수인 및 매도인)
- 5조 확약(거래종결 전, 후: 경업 및 유인금지 등)
- 6조 진술 및 보장(매도인, 매도인의 대상회사, 매수인)
- 7조 손해배상
- 8조 해제
- 9조 비밀유지
- 10조 기타규정
- 11조 이하 관할법원 등 기

거래종결 관련

보증/확약

해제 및 손해배상

## SSA 구성항목

- 1조 용어의 정의
- 2조 본건 거래(발행주식수, 단가 등)
- 3조 거래종결(거래종결 신주발행,대금 납입 등 방법)
- 4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(인수인 및 발행회사)
- 5조 확약
- 6조 진술 및 보장(인수인 및 발행회사)
- 7조 손해배상
- 8조 해제
- 9조 비밀유지
- 10조 기타 규정

거래종결 관련

보증/확약

해제 및 손해배상

## SSA 구성항목(1/2)\_SHA구성 요소 포함

■ 1조 계약의 목적 ■ 2조 정관 등의 변경 처분 제한 ■ 3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: 발행회사 및 이해 관계자 권리, 의무 양도 시 투자자 동의 ■ 4조 계약의 변경 5조 해석 • 6조 효력발생 거래종결 관련 ■ 7조 선행조건 ■ 8조 진술과보장 보증/확약 • 9조 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■ 10조 우선주의 내용 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 1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

## SSA 구성항목(1/2)\_SHA구성 요소 포함

• 12조 배당금에 관한 사항 • 13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수, Exit • 14조 전환에 관한 사항 • 15조 상환에 관한 사항 ■ 16조 신주인수권 • 17조 기술의 이전금지 ■ 18조 동의사항 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 • 19조 보고, 자료제출 및 협의사항 • 20조 이사 선임권 • 21조 상장(IPO) 회수, Exit • 22조 투자금 사용용도 23조 투자자의 Tag along 해제 및 손해배상 ■ 24조 손해배상, 25조 비밀유지, 26조 통지

## Question

• '손해배상'과 '면책'은 계약서 상 같은 의미이다.

## 주요 용어\_Tag along vs Drag along

### Tag along (주식 매매 계약서)

- 특정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매도 거래에 자기 보유 주식을 동반(동일한 조건) 매각하도록 요구(Tag)하는 권리
  - →Drag 대비 범위와 Trigger 중요
  - →'전부' 또는 '일부' 일반적, Pro rata(지분율)
  - →Trigger: 경영권 매각 시, 1주 매각 시 등

### Drag along (주주간 계약서)

■ 특정 주주가 자기 보유 주식을 매각할 때, 다른 주주의 주식도 (동일한 조건) 같이(Drag) 매각할 수 있는 권리 →'전부' 또는 '일부' 일반적, Pro rata(지분율)

## 주요 용어 \_ROFO(N) vs ROFR

# ROFO or ROFN

- Owner가 매각 희망 시, 맨 먼저 Holder에게 인수 의향을 제안 또는 협상.
  H가 거절하거나, 협상이 결렬된 경우 Buyer 탐색 가능
- →SI-FI 컨소시움 구성, SI 자금력 부족으로 지분율 낮은 경우

#### **ROFR**

- Owner가 매각 희망 시, 먼저 Buyer와 계약 및 가격 협상. Owner는 이후 Buyer와 합의된 가격조건으로 Holder에게 인수 제안. Holder가 거절 시에 Buyer에게 매각 가능
- →OB맥주: AB인베브-KKR(AB인베브 Call option, Affinity / 코웨이: 웅진-MBK

## 주요 용어\_해제 vs 해지

해제

-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소급적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회복시키는 행위 (소급하여 효력 발생, 원상 회복 의무 有)
- →당사자들간 합의 또는 본 거래(주식매매 계약) 해제 등

해지

-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온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소멸시키는 행위
   (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, 원상 회복 의무 無)
  - →당사자들간 합의, 일방의 지분 정리, 일방의 회생, 파산 등, 일방의 계약 상 의무 위반

## 주요 용어\_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

### 손해배상액의 예정

- 위약금 약정은 (별도의 근거가 없는 경우)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
  →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을 추정하는 성격
- 부당히 과다하고 판단되면 (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)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 가능

### 위약벌

-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,입증 필요→불이행에 따른 손해와 별도로 가해지는 (금전적)제재
- 법원의 직권 감경 권한 無
- →지나치게 액수가 과할 경우 위약벌 자체가 무효화 가능

## 주요 용어\_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

### [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Case: 한화-산업은행]

- 한화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목표로 산업은행과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,15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. 위 인수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산업은행에서 위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였고, 이에 한화에서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
- 한화는 1,2심에서 패소하였지만,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한화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.
- 1.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
- "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서와 같이 '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.'고 정한 것이 위약벌 약정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.
- 그런데 <u>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,</u> <u>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·증명되어야 하며</u> (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9034 판결,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4다3115 판결 등 참조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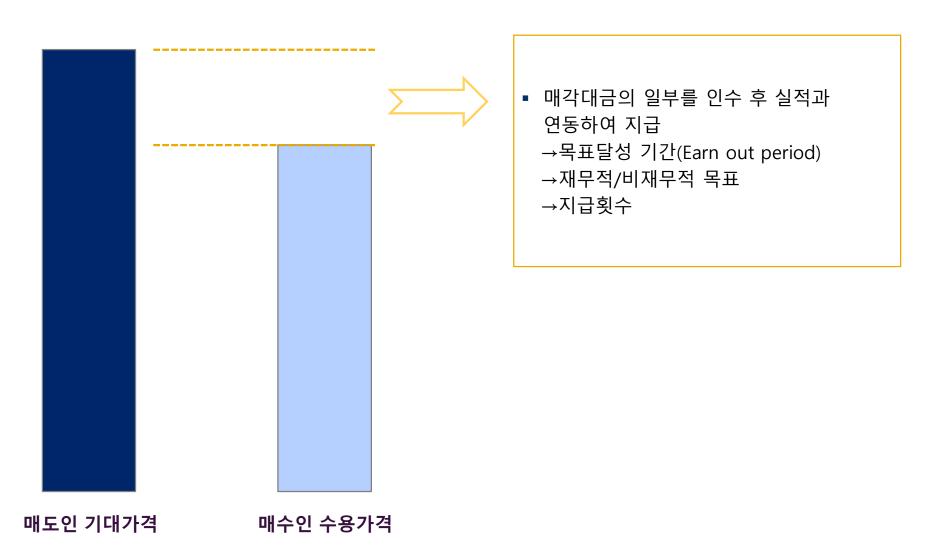
주요 용어\_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

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,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,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,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,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,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,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,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,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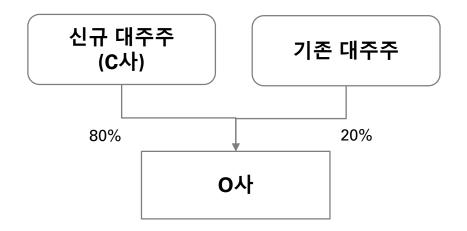
## Valuation\_Refixing

- 해당 **영업연도 중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영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**, 전환가격을 45,000원으로 조정
  - 2018년 성과목표: 매출액 1,600억원 / EBITDA 180억원 / 영업이익 150억원
  - 2019년 성과목표: 매출액 1,900억원 / EBITDA 220억원 / 영업이익 190억원
  - 2020년 성과목표: 매출액 2,200억원 / EBITDA 260억원 / 영업이익 220억원
- **주당공모가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이 IPO당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** 확정공모가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
- 조정 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해당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가격(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포함) 으로 조정
- 준비금의 자본전입(무상증자), 주식배당 또는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
  - -조정 후 전환가격 = 조정 전 전환가격 x {상환예정주식수 + (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 / 조정전 전환가격) / (상환예정주식수 + 신발행주식수)}
- 자본의 감소, 합병, 주식액면분할/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에 본 주식이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

## **Valuation\_Earn out**



## C사의 O사 인수(Structure)



#### [Deal Structure]

■ 기존 대주주 지분 80% 인수

✓ 신규 대주주: FI로 IRR 충족하는 선순위 확보, 기존 대주주 및 특관자 보유 부동산 사용 조건 변동에 대한 Concern 高

✓ 기존 대주주: 경영권 매각(회수) Needs 강하였고, 매수자 확보에 난항

## C사의 O사 인수(주요 Term)

### 이사회

- 신규 대주주, 기존 대주주 각각 4인, 1인 선임(8:2)
- 기존 대표이사 고문(無 급여)으로 사업 및 M&A 자문
  →이사들은 고문의 자문 결과 대한 의존 여부를 소송 등에서 주장 불가

### 처분제한

- 신규 대주주는 거래 종결일 후 3년까지 사전 서면 동의없이 매각불가
- 기존 대주주는 보유 지분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시 신규 대주주 사전 서면동의

### 신규대주주 Drag along

- 일부 매각 시, 매수인과 주주간 약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 상의 지위도 동일 →Second Deal 염두
- 수익 배분 상, 신규대주주 선순위 보장→신규 대주주 IRR 8%, 기존 대주주 IRR 8%, 지분비율 順

### 기존 대주주 Tag along

- 매각 당시 지분율과 Pro rata
  - →'투자자의 각 대상회사 주식별 매각비율(매각주식수 / 소유주식수)을 기존대주주 소유 주식 수에 곱한 것을 초과할 수 없음'
  - → '제3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총수가 매각대상주식과 동반매각대상주식 총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투자자는 투자자와 기존대주주가 그 당시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들 발행주식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 안분...'

## C사의 O사 인수(주요 Term)

### 배당/ 수익배분 특례

- 신규 대주주 IRR 8% 초과 시 까지, 기존 대주주 배당권 포기
- 신규 대주주 IRR 15% 초과 시, 초과수익분의 20%(종결후지급금)을 기존 대주주에게 지급

#### 기타 확약사항

- SHA 유효 기간 동안 O사 사용 기존 대주주 부동산 현재와 동일 조건 사용
- 거래종결 후 5년, 신규 대주주가 Minor가 될때까지 사전동의 없이 임차부동산 매각 불가
- SHA 종료 후에도, 임차부동산 매각 시 ○사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→평가방법 및 거래절차 세부 규정 有
- O사의 영업관련 부동산 투자에 기존 대주주 투자기회 부여
- 기존 대주주의 연대보증 해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(Best effort),
  불가 시 보증채무의 변제자금 사내유보 및 변제에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
- 신규 대주주는 O사가 특정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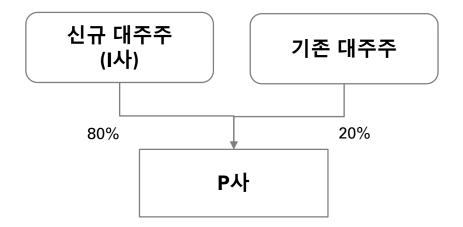
### 손해배상 (위약벌)

■ 기존 대주주가 처분제한 위반시, 매각대금 전액을 위약벌로 지급

#### 해제/해지

■ SHA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, 기타확약사항, 처분제한, 경업금지 등 유효

## I사의 P사 인수(Structure)



#### [Deal Structure]

- 기존 대주주 지분 50% 인수
- FI보유 RCPS 매수
- 신규 대주주 RCPS 인수

- ✓ 신규 대주주: 기존 대주주 경업관련 강력한 Protection 필요, 면책 관련 담보 필요
- ✓ 기존 대주주: 경영권 매각(회수) Needs

## I사의 P사 인수(주요 Term)

### 이사회 및 주요 경영사항

- 신규 대주주, 기존 대주주 각각 4인, 1인 선임(8:2)
- 기존 대주주가 대표이사, 감사는 100% 신규 대주주가 선임
- 신규 대주주의 초과수익을 기존 대주주에게 Exit 인센티브로 지급 →투자원금 2배~2.5배 금액의 10%, 2.5배~3배 금액의 12%, 3배 초과 금액의 15%
- 신규 대주주의 Exit 완료 이전 IPO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IPO 매출 가능
- 신규 대주주는 거래 대상 제외 임직원 보유 주식을 Exit시에 신규 대주주의 매각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

### **Drag & Tag**

■ 매각 당시 지분율 Pro rata(단, IPO 이후 장내매각의 경우 제외)

### 기존 대주주 근무

- 급여 명시, 실적에 연동하여 조정
- 합의된 실적 미달, 손해 발생 등 사유 시 대표이사 해임
- 통상적인 문구에 추가로, 경쟁회사 투자 및 대여금지, 경쟁회사에 임직원 취업 권유 행위 금지

## I사의 P사 인수(주요 Term)

면책

- 기존 대주주 잔여 지분 질권설정
- 기존 대주주간 연대보증 의무, P사에 대한 구상이나 배상청구 불가
- 신규 대주주 Exit 전, 기존 대주주 지분관련 매각대금, 배당금, 감자 환급금의 금원은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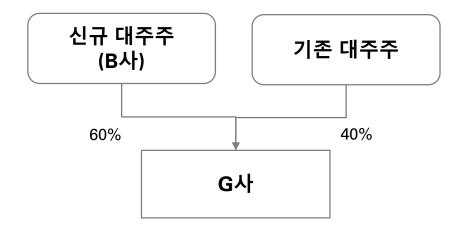
해지

- 합의 또는 일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 시
- 해지 시에도 경업금지, 비밀유지, 손해배상 등은 유효

## Question

■ 계약 상대방에서 특정사항에 대해 '최선의 노력(Best effort)'을 기재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.

## B사의 G사 인수(Structure)



#### [Deal Structure]

- 기존 대주주 지분 50% 인수
- 신규 대주주 보통주 10% 유상증자

- ✓ 신규 대주주: 사업 특성 상 기존 대주주의 경업 및 이탈(제3자 매각 포함)에 대한 Concern 高, 손해배상 관련 담보 필요
- ✓ 기존 대주주: 신규 대주주 SI 향후 매각 또는 IPO 계획 無, 잔여 지분 Exit 보장 방안 중요

## B사의 G사 인수(주요 Term)

### 이사회

'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' 및 '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
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'은 이사회 전원 동의 사항
 →(이사회는 3인으로 구성) B사는 유사업종 계열사 및 추가 인수기업과 G사합병 고려, 기존 대주주 Exit의 안정성 위한 Protection

#### 처분제한

거래종결 후 3년9개월 까지, 양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
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자 매각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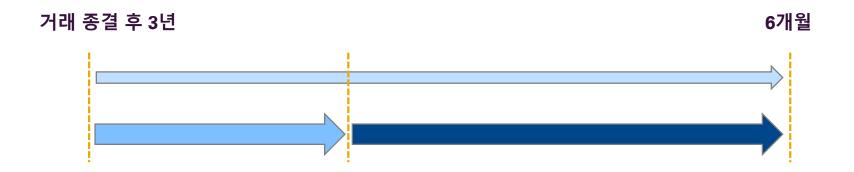
### B사 우선매수권 (ROFR) 및 Call option

- 의무보유기간(거래 종결 후 3년 9개월) 종료 후 1년간 B사 ROFR 보유 →의무보유기간: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거래 종결 후 3년 9개월
- 거래종결 3년 후, 3개월 간 B사 Call option(최초 매각가격) 보유

### 기존 대주주 Drag along 및 Put option

- Call option 행사기간 종류 후, 6개월 간 주요 주주 Put option (최초 매각가격\*65%) 보유
- Call option 행사기간 종류 후, 6개월 간 주요 주주 Drag along 보유 (매수인에게 최초 투자 Valuation 회수 보장)

## B사의 G사 인수(주요 Term)



- ✓ 신규 대주주: 회사의 성장이 계획대로 지속되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고히 하려는 경우, 단기간 (3개월 내)에 의사결정(Call행사) 하지 않으면 경영권에 대한 Risk 발생
- ✓ 기존 대주주: 최초 매각가격 기준 65% 이상(Put option 행가가격)의 Upside 확보가능한 기간 구조 확보

## B사의 G사 인수(주요 Ter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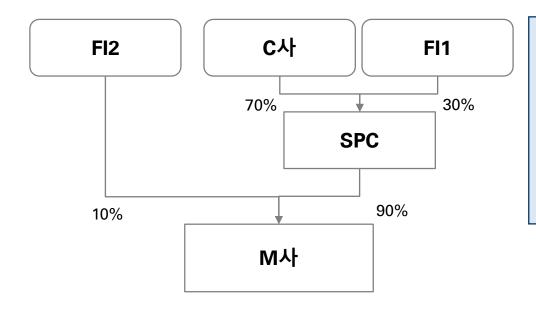
### 손해배상 (위약벌)

- 기존 대주주 잔여지분 질권 설정
- 기존 대주주 중 1인 3년간 이사로 재직, 경업금지(5년) 위반 시: 50억원
- 의무보유기간(최대주주 동일 적용), ROFR 위반 시: 100억원
- 최대주주의 Drag along 위반 시: 100억원
  - →양자가 합의한 방식 이외의 주식 처분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 규정

#### 해제/해지

- 해제, 해지 사유는 통상적인 경우와 유사
- 기존 대주주 의무(이사 재직, 주식 보유 및 처분, 경업금지) 위반 시 Penalty
  - →신규 대주주는 기존 대주주 잔여지분 Put option 행사가격 50% 매입 가능
  - →또는, 해산 및 청산 가능(해제 또는 해지 관련 모든 손해 보전된 것으로 간주,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)
  - →불응 시 위약벌 100억원

## C사의 M사 인수(Structure)



#### [Deal Structure]

- C사 M사 지분 100% 인수
- FI1 TRS 27% 투자
- FI2 보통주 10% 투자

✓ C사: FI 참여 비율과 인수금융 사용에 따른 부채비율 조절

✓ FI2: FI1과 별도의 Exit 가능성

## C사의 M사 인수(주요 Term\_FI1)

### FI1 매도가능 기간

■ 투자 후 4년 5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부 매각까지

### C사 우선매수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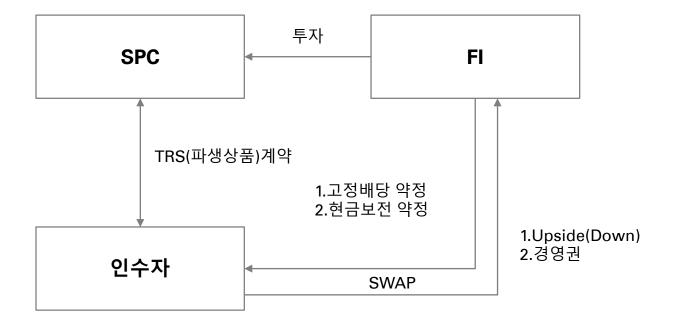
• 4년 5개월이 되는 날부터 4년 10개월이 되는 날까지

### C사 정산 의무

■ 대주주정산금 = 정산기준 금액(취득원금+약정수익률) – 매도금액 – 투자배당금 →FI2는 제한적으로 IPO 시기 조절 가능

# C사의 M사 인수(Structure)

## [TRS 구조]



## C사의 M사 인수(주요 Term\_FI2)

#### 처분 제한

■ IPO될 때 까지, C사 및 FI2 처분 제한

#### **IPO**

- 거래종결일 기준 4년, 상장위원회 설치, FI2 1회 IPO 절차 중단요구 가능, FI2 구주매출 우선권
- →FI2는 제한적으로 IPO 시기 조절 가능

# Drag & Call

- IPO 실패 시, FI2는 C사 보유 M사 지분 Drag along 가능
- Drag along 통보 시, C사는 직접 또는 C사 지명 제3자 FI2 지분 매입 가능
- →Drag & Call을 통해 FI2는 보완적 Exit 구조 확보, C사 부채 비율 조절 (Put option과 실질적으로 유사)

### 기타

- 주요 경영사항 사전 동의권: 자산 총액 10% 이상 투자, 차입
- 보고 및 자료요청권: 자산 총액 5~10% 투자, 차입
- FI2의 Tag along(사전 동의 후 제3자 매각 시)



kpmg.com/socialmedia













kpmg.com/app



kpmg.com/kr



©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.,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("KPMG International"), a Swiss entity. All rights reserved. Printed in Korea.

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.